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
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·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884호, 2025. 4. 1. 공포, 2025. 10. 2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실태조사의 방법, 절차, 주기를 정함(안 제2조의2)

- 1)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
- 2)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를 규정함에 따라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그 주기를 정할 필요가 있음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의 제목 중 “실태조사”를 “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”을 “법 제5조의2”로, “매년”을 “현지조사, 서면조사 또는 전화·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조사대상의 선정, 조사기간의 설정,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, 기본계획의 수립,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 2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27년에 실시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의2(사회서비스 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<u>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.</u>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<u>생애주기별·서비스영역별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및 사회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에 관한 사항</u> 2. <u>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등에 관한 사항</u> 3. <u>그 밖에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u><신 설></u>	제2조의2(사회서비스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) ① ----- ----- 법 제5조의2----- ----- ----- ----- <u>현지조사, 서면조사 또는 전화·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</u> ----.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<u>조사대상의 선정, 조사기간의 설정, 조사표 개발 및 조사원 교육 등의 순서로 한다.</u>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<u>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, 기본계획</u>

의 수립,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
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
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
할 수 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208